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1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청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 제안이유

- 양천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263.21m ²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위 치 도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청년활력 증진 사업(청년밥상, 심리치료,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 청년역량 강화 사업(강연, 취·창업 지원, 청년장터)
 - 무중력지대 홍보사업
- 소요예산 : 320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9조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양천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무중력지대 양천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위치·규모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263.21㎡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위 치 도	 

-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2018. 1. 1 ~ 2019. 12. 31) 무중력지대 양천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 연간 320백만원(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위·수탁 사무
- 청년활력 증진 사업(청년밥상, 심리치료,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 청년역량 강화 사업(강연, 취·창업 지원, 청년장터)
- 무중력지대 홍보사업

나. 무중력지대 양천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서대문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운영시간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예정)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주 이 용 대 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 용 시 간	365일, 24시간 운영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 ~일, 10:00~10:00
주 요 공 간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 업 내 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운영 계획 수립(17.2.20)이후 무중력지대(양천)설치 관련 예산을 양천구에 재배정하였고,(17.3.7), 무중력지대 양천 설계용역 계약(17.3.29) 이후 현재,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11.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016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16. 8.)

□ 추진경과

- 무중력지대 사업추진 자치구 실무담당 팀장회의('17.1.4.)
 - '17무중력지대 추진계획 관련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운영 계획 수립(청년정책담당관-2390, '17.2.20.)
- 무중력지대 양천 예산재배정(청년정책담당관-3183, '17.3.7.)
- 무중력지대 양천 설계용역 계약('17.3.29.)
- 서울시 청년공간지원추진단 회의('17.4.13.)
 - 복층에서 단층으로 변경,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안) 결정
- 무중력지대 양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자치구·청년단체 의견수렴('17.6.1.~6.7.)
 - 지역청년 특성을 반영한 청년활력프로그램, 취·창업 등 프로그램 등 제안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중력지대 양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9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민간위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시된바 있음.

-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곳(무중력지대 대방, 무중력지대 G밸리)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서대문, 양천, 성북으로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해당 시설을 구유지에 설치하는바, 양천구에서는 “조건부 반영구” 사용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다양한 부대조건¹⁾을 첨부하고 있는바,

1)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청년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억 2천만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향후 무중력지대 설치의 편익이나 성과물 도출 등 예산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금 액 : 320백만원('18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20,000	124,000	64,500	131,500

○ 산출내역(안)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총 계	320,000	
인건비	124,000	
센터장	3,500천원*1명*12개월=42,000천원(수당포함)	기존 무중력지 대 인건비 준용
매니저	3,000천원*2명*12개월=72,000천원(수당포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00천원	
운영비	64,500	
공공요금 및 세제	2,000천원*12개월 = 24,000천원	기존 무중력지 대 운영비 준용
우편통신비	320천원*12개월 = 3,840천원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0천원*12개월 = 7,200천원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5천원*12개월 = 4,740천원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0천원*12개월 = 3,600천원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300천원*12개월 = 1,560천원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0천원*12개월 = 1,920천원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양천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여비(시내·외 출장)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	
사업비	131,500	
1) 청년활력 증진사업	69,600	
ㄱ. 청년밥상 운영	100천원*24회*12개월 = 28,800천원	
ㄴ. 감성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천원*12회*12개월 = 28,800천원	
ㄷ. 공유물품 운영	100천원*12개월 = 12,000천원	
2) 청년역량 강화사업	50,000	
ㄱ. 청년강연프로그램	500천원*2회*12개월 = 12,000천원	
ㄴ.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500천원*4회*12개월 = 24,000천원	
ㄷ. 청년교류프로그램	500천원*4팀*4회 = 8,000천원	
ㄹ. 오목교 수변광장 청년장터	500천원*12회 = 6,000천원	
3) 무중력지대 홍보	11,900	
ㄱ. 무중력지대 양천 온라인 플랫폼 조성 홍보	2,000천원*1회 = 2,000천원	
ㄴ. 홍보(홍보물 등)	2175천원*4회 = 8,700천원	
ㄷ. 청년 창업가, 단체 등 홍보	100천원*12회 = 1,200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양천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 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 다.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263.21m ²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위 치 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청년활력 증진 사업(청년밥상, 심리치료, 청년교류프로그램 등)
 - 청년밥상 운영 : 학업·취업에 지친 청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건강밥상 운영
 -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유를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 및 건강한 심신유지
 - 청년교류프로그램 : 유사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모임 조성 및 지원
 - 공유책장 운영 : 청년들의 정보, 도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책장운영
 - 청년역량 강화 사업(강연, 취·창업 지원, 청년장터)
 - 청년들이 희망하는 강연 개설 : 자이탐색, 진로관련, 취창업 성공사례 등 동기부여 강연
 -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오목수변공원 청년장터 운영 : 소규모 청년사업자 물품 판매 행사 및 홍보 등
 - 무중력지대 홍보사업
 - 무중력지대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사업홍보
 - 무중력지대 양천(청년 및 청년단체)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320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9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지원팀 박지연(☎ 2133-6592)